

※ 이 안내문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개별 보육실습기관(어린이집), 양성기관 등의 여건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보육실습 안전관리 안내

2021. 8. 2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 목 차

I. 개요 .....	1
1. 목적 .....	1
2. 기본방향 .....	1
I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	2
1. 보육실습 시행 전 점검 사항 .....	2
2.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2
3. 보육실습 중 감염 예방 관리 .....	3
4. 실습기관 출입시 관리 강화 .....	3
5.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실습 진행 .....	5
▷ 불 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수칙 .....	6
2.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8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10
4.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	11
5. 예방접종이력 확인 방법 .....	12
▷ 서 식 ◁	
1. 간접실습 확인서 .....	14
2. 보육실습생 서약서 .....	15
3. 보육실습생 사전 건강관리 기록지 [예시] .....	16
4. 보육실습생 코로나19 사전 문진표 [예시] .....	17
5. 보육실습생 건강 모니터링 [예시] .....	18

# I 개 요

## 1. 목 적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및 델타변이 4차 유행으로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하는 학생·양성관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대응절차를 마련하여 실습 중 안전 도모
-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해 실습기관과 양성기관의 역할 분담 등을 제시하며, 실습 대상 및 환경 등을 고려해 변경 가능

## 2. 기본방향

- 실습기관과 양성기관은 코로나19 관리 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실습생, 실습기관의 실습관리자, 양성기관의 실습 담당 교원 등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기 인지 및 전파 방지 조치
- 양성기관이나 실습기관에서는 보육실습 중 방역 및 안전관리가 곤란할 경우 실습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용어 정의

- **양성기관** : 보육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실습기관(어린이집)에 소속 학생들의 실습교육을 위탁
- **실습기관** : 학생들의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습교육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 **양성관리자** : 양성기관 소속 교원(실습 지도교수 및 교·강사 등) 중에서 지정하며, 실습생 교육 및 지도·관리, 실습관리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수행
- **실습관리자** : 실습기관에서 지정하며, 실습생 증상 모니터링 및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유지 등 실습환경 전반을 관리  
(※ 실습기관 소속으로 실습 지도를 담당하는 지도교사 등과 동일한 사람을 지정할 필요는 없음)
- **실습생** : 실습기관에서 보육실습을 수행하는 양성기관 소속 학생

## 1. 보육실습 시행 전 점검 사항

- 양성기관은 실습 시행 여부를 결정하며, 감염 등 학생 안전에 위해가 우려될 경우\* 실습 일정·장소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여 조정하여야 함
  - \* 실습 지역에서 대규모 집단발병 등 실습 진행이 어려운 경우
  - 보육실습 여부 결정 및 일정 조정 시 실습기관(어린이집)과 협의 필요
- 양성기관은 개별 실습생의 건강상태 점검을 통해 실습 참가 여부 결정
  - 최근 해외 방문 여부, 의심환자 및 해외 여행력 있는 사람 등 접촉 여부, 발열(37.5℃ 이상)·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기저질환 등 확인 필요
  - 실습 예정 학생은 해외여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해외 여행력 있는 학생은 귀국 후 2주간 보육실습에서 배제하도록 지도
  - 실습 이전 2주 동안(최소 1주 이상) 예비 실습생의 건강 상태를 매일 기록(서식3)하여 실습시작일에 실습기관에 제출
- 양성기관은 실습 예정 학생에게 코로나19 행동수칙, 기본정보 및 개인 위생(실습기관 출입 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등 사전 교육(붙임1~4)
- 실습생은 보육실습생 준비자료 중 보육실습생 서약서(서식2), 보육실습생 사전 건강관리 기록지(서식3), 보육실습생 코로나19 사전 문진표(서식4)를 준비하여 실습기관에 제출

## 2.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은 각자의 역할 분담, 실습 범위, 감염 예방교육, 출입 관리 등을 포함한 예방·대응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 실습기관에서는 실습관리자\*, 양성기관은 실습 담당 교원 중 양성관리자\*\*를 지정하여 기관 간 협력, 감염병 예방·관리 수행

\* 실습생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 실습 장소 환경관리,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유지 등 수행

\*\* 실습 지도교수 및 교강사 중 지정하며, 실습생 교육 지도·관리, 실습관리자와 협조 등 수행

### 3. 보육실습 중 감염 예방 관리

#### ○ 실습생 감염 관리

- 양성관리자는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위험요소(실습 중 확진, 확진자와 밀접 접촉 등)를 사전 확인·교육\*하고, 실습 여부는 실습기관 판단에 따름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Ⅷ-2판」 참조
- 실습관리자는 개인위생수칙을 안내하고, 실습 중 호흡기환자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염 예방 지도·감독 강화
-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자가격리 수준으로 외출이나 외부인 만남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 실습 중 개인위생수칙(예시)

- 실습 전·후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고, 종이 타올 등으로 닦기
  - \* 물과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이 없는 경우 알코올 손 세정제 사용 가능
- 눈·코·입 만지지 않기
- 기침할 땐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 휴지가 없을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 후 손 씻기
- 실습시간 내 아동접촉 시, 보호자 포함 외부인 접촉 시 마스크 착용하기

#### ○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실습기관은 실습생 대상으로 실습기관의 코로나19 관련 감염관리 지침 등을 활용하여 감염예방 교육\* 실시
  - \* 감염예방관리 교육자료(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공지사항) 혹은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Ⅷ-2판」 참조하여 교육 실시
-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감염병 예방 등에 관련한 각종 홍보물\*을 실습생들이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내 주요장소에 부착(붙임1~4)
  -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4. 실습기관 출입 시 관리 강화

- 실습관리자는 실습생·실습지도교사 등에게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출입하도록 안내

- 실습관리자는 실습생의 출입자 대상 1일 1회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서식5)
- 양성관리자·실습관리자는 실습생에게 출입 혹은 실습 중 호흡기 증상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실습 중단
  - 증상이 나타난 실습생은 양성관리자(지도교수 및 교·강사 등)과 실습 기관의 실습관리자에 보고
  - 실습관리자는 해당 실습생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뒤, 실습기관 내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증상 대응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증상이 나타나면 기관 출입을 중지하고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휴식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도록 안내·관리
- ⇒ 증상이 심해지면 관할 보건소,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등에 상담하고,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
- 양성관리자 및 실습관리자는 실습생이 원내 보육교직원 감염원 및 영유아에게 전파되어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감염관리에 철저
  - 실습관리자는 실습생에게 원내 보육교직원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관리
  -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외부인 접촉 및 사적모임 자제, 특이사항 (타 지역 방문) 등 관련 이력 및 계획을 실습관리자에게 보고
- 양성관리자는 실습생의 코로나 확진(또는 자가격리, 유사증상 발현) 등으로 보육현장실습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실습 4주에 준하는 간접 실습을 교육기관 자체 계획하여 실시
  - \* 상기의 경우 자격증 신청 시, 코로나19 관련 증빙자료(진단서, 교육기관 장 확인 서류 등) 및 간접실습확인서(서식1) 제출 필수
  - 코로나 관련 증빙자료 등 관련 근거 기록을 관리하고, 교육이행 확인 점검 등 학업이행 지도·관리에 철저

- 양성관리자 또는 실습관리자 등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실습기관에 출입하지 않도록 실습생들에게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할 것

## 5.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실습 진행

- 유행 지역 감염 확산 양상, 감염관리 및 보육종사자 예방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 결정에 따라 강화 또는 부분 완화 변경 시행 가능
- (2~3단계) 외부인 출입 자제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예방접종 여부 확인 후 출입 여부 결정
    - 예방접종완료자는 '출입 허용'
    -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출입 자제이나 이동 및 보육교직원 접촉을 최소화하여 '제한적 출입' 허용
- (4단계) 외부인 출입 금지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만 제한적 출입 허용
    - 예방접종완료자는 '제한적 출입 허용'
    -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출입 금지'
  - \* 예방접종 미완료자이나 어린이집의 필수적인 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외부인 출입이 필요한 경우 등 원장의 판단에 따라 이동 및 보육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

### 보육실습생의 방역지침 관련 제출 서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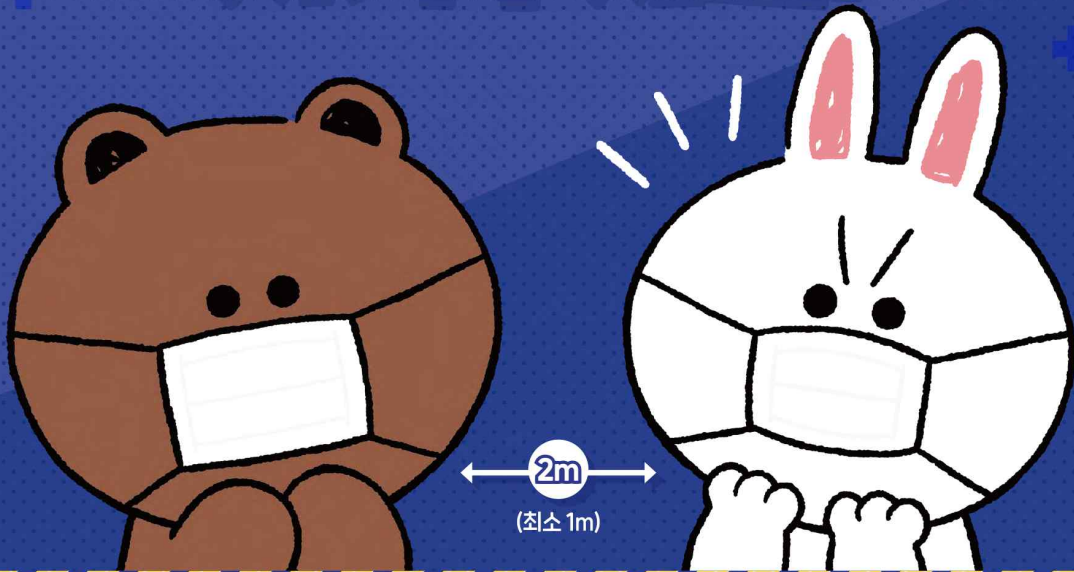
1. 예방접종 증명서
2. 보육실습 2주전(최소 1주 이상) 부터의 사전 건강관리 기록지
3. 보육실습생 코로나19 사전 문진표
4. 보육실습생 서약서(실습기간 동안 외부인 접촉 자제)

2021.06.17

질병관리청 X LINE FRIENDS

나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 코로나19 방역수칙, 지켜주세요!



입과 코를 가려 **마스크 착용**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흐르는 물에 **비누를 자주 손 씻기**



직장 동료, 함께 사는 가족 외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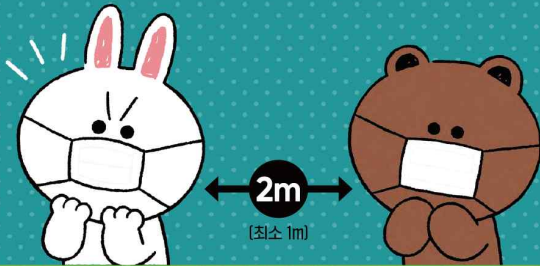


# 나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지켜주세요!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라인과 접촉 최소화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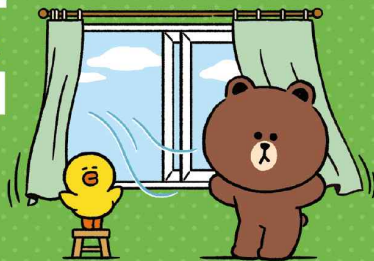
입과 코를 가려 **마스크 착용**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자주 손 씻기**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 외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마스크 착용!



## 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세요! ”

실내

▪ 상시 마스크 착용

실외

▪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및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마스크 착용!



## 주의해야 할 경우



☆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 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 ”



#### ▪ 24개월 미만 영유아

※ 단, 아동 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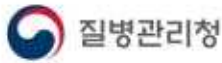
####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함



####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소명 시 예외 인정 가능



# 코로나19를 이기는 가장 손 쉬운 방법

## 올바른 손씻기



꼼꼼하게~

뽀득 뽀득~

손바닥,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구석구석 꼼꼼하게!

### [ 올바른 손씻기 6단계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 밑

발행일 2020.10.15.

**□ 기본 원칙**

▲ 외출·모임 자제, ▲환기·소독, ▲개인위생수칙 준수, ▲의심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1 가족 감염 예방 수칙**

-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실천하기
-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2 부득이하게 외출 시**

- 밀폐된 실내·밀집한 장소·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 붙임5

## 예방접종이력 확인 방법

- 예방접종자(1·2차)는 예방접종증명서(스마트폰 앱(COOV) 또는 종이 증명서)를 제시하고, 실습기관의 실습관리자 등은 이를 확인

### 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인

1-1. (예방접종자)  
어플리케이션  
(COOV)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제시



1-2. (확인자)  
어플리케이션  
(COOV)에서  
QR코드 스캔하여  
검증



## 2. 종이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한 확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9. 11.>

제 호 No.		<b>예방접종증명서</b> Certificate of Immuniz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Month/Day/Year)		
주소 Address		성별 Sex		
접종명 Vaccine	접종처수 Vaccination Series	접종일 Date Given(Month/Day/Year)	접종기관 Provider/Clinic	
<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all the above vaccinations were performed under Article 27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bove-mentioned Act.</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Year    month    day           </p> <p style="text-align: center;">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료기관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직인 Seal</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Governor of (    )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    ) Si/Gun/Gu, The head of (    ) medical institution           </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210mm×297mm[복합지 80g/㎡(재활용품)]</p>				

Q. 예방접종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완료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COOV) 설치\* 또는 종이로 된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통해 예방접종 증명 가능 (1차 접종자도 접종 사실 확인 가능)
  -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설치 전자출입명부 방식과 동일하게 QR로 간편 인증 가능(4.14~)
  -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접속하여 출력**
  - ※ 발급기관 확대 추진(접종 의료기관→읍·면·동)

**간접실습 확인서**

보육실습생 ○○○는 2021년 ○학기에 보육실습 6주 240시간 중 2주를 간접실습으로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성 명 : ○○○
2.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3. 양성교육기관: ○○대학교 ○○학과
4. 학번 :
5. 간접실습 내용

담당교수	간접실습기간	간접실습시간	간접실습방법
○○○	'20.0.00.~ 0.00.	○○ 시간	세부 운영방법 및 내용 기재

년 월 일

학과장

(서명 또는 인)

- ※ 간접실습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대체운영 가능(양성기관 내에서 특강·모의수업, 온라인 수업·참관 등 간접방식으로 운영)
- ※ 2주 간접실습 이수 시, 직접실습기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필수
- ※ 6주 240시간 동안 직접실습을 이수한 자는 '보육실습확인서'만 제출



## 보육실습생 서약서

상기 본인은 귀 어린이집의 보육실습생으로서 보육실습의 목적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린이집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보육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실습 2주 전(최소 1주 이상)부터 실습기간 동안 외출이나 외부인 만남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실습에 임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씻기·기침예절 준수, 악수포용 등 신체접촉 자제 등)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어 린 이 집 원 장 귀 하

### 서식 3

## 보육실습생 사전 건강관리 기록지 [예시]

### 보육실습생 사전 건강관리 기록지

※ 본 기록지는 실습생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준하여 실습을 시작하기 2주전(최소1주 이상)부터의 자기건강 관리를 하는데 활용되며, 실습 시 기관 출입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소속	학생 성명	학생 연락처	비상(가족/동거인) 연락처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거주지 외) 국내외 여행력	국내외 여행자	국내외 여행일자	국내외 여행지

일자(요일)	/ ( )	/ ( )	/ ( )	/ ( )	/ ( )	/ ( )	/ ( )
1. 학생 본인은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 <sup>1)</sup> 이 있나요?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자(요일)	/ ( )	/ ( )	/ ( )	/ ( )	/ ( )	/ ( )	/ ( )
1. 학생 본인은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 <sup>1)</sup> 이 있나요?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1) 주요 임상증상: 체온 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경. (단,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제외)

서식 4

보육실습생 코로나19 사전 문진표 [예시]

보육실습생 코로나19 사전 문진표

※ 보육실습생 코로나19 사전 문진표는 어린이집의 방역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 실습 전 사전 확인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해당사항에 ☐표기 및 기재)

1.	최근 1개월 이내 본인 또는 동거인이 해외를 방문(또는 거주)한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최근 14일 이내 본인이나 동거인이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하였거나, 발생지역(또는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대상자: ) (방문지역: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한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검사일: 월 일) (결과: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진단일: 월 일) 완치/퇴원일: 월 일)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최근 14일 이내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거나 가족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대상자: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1차접종: 월 일) (2차접종: 월 일)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최근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 관련 증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증상: ) (발현시기: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본 문진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실대로 답변하였습니다.

년 월 일

보육실습생 : (인)

**서식 5**

**보육실습생 건강 모니터링 (예시)**

연번	이름	소속	날짜	일시	체온(℃)	호흡기 증상 <sup>1)</sup>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권태감	⑤ 기타	특이사항
				09:00	36.5	-	-	-	√	설사	

1) 호흡기 증상은 실습생이 직접 기록